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 반도체·전기차 시장 열고 핵심광물 확보

[이주의 초점]

반도체 25% 관세 철폐·자동차부품 즉시 무관세 및
리튬·희토류 공급망 확보 (4p)

[전문가 칼럼: 박주현의 통상 인사이트]

‘반덤핑 도미노’ 한국이 ‘표적’ 됐다...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무역구제 압박 (18p)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세계 니켈 60% 생산국 인도네시아,
채굴 축소·수출통제 강화 (15p)

[위클리 뉴스]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필리핀 수출품목 17개
지정 및 한·UAE CEPA도 적용
9월부터 해외 직구 씨앗도 식물검역증명서 의무화
11월부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 시 동물검역 대상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6월 18일 시행 (9p)

[판례 동향]

검사 지휘로 폐기된 가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9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6월 15일(통권 제2183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한·세르비아 CEPA 타결... 반도체·전기차 시장
열고 핵심광물 확보

전문가 칼럼

- 18** 박주현의 통상 인사이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확산되는 반덤핑조사 도미노
“한국, ‘결다리’에서 ‘표적’으로”

09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 26** 질의응답사례
수입통관 시 분석 의뢰 대상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 15** 세계 니켈 60% 생산국 인도네시아,
채굴 축소·수출통제 강화

판례동향

- 29** 관세판례해설
검사 지휘로 폐기된 가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세르비아 CEPA 타결··· 반도체·전기차 시장 열고 핵심광물 확보

자동차부품 즉시 관세 철폐 및 리튬·희토류 공급망 확보

우리나라가 서부발칸 지역 핵심국가인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타결했다. 발칸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보하는 동시에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미래산업 협력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부는 6월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FTA를 넘어 공급망과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좌)과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우)
(출처: 산업통상부)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산업부는 세르비아가 자동차·기계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유럽연합(EU)에 인접한 입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춘 서부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이라고 평가했다.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이 2025년 12월 22일 발간한 ‘2026 세르비아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EU 가입국은 아니지만 EU,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중국, 튀르키예 등과 FTA를 체결하고 미국·일본·호주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운영하는 등 총 46개국과 무관세 또는 저관세 교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OTRA는 세르비아가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서부발칸 지역의 생산·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 진출 기업들이 세르비아를 EU와 러시아,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양국의 무역규모는 7,400만달러로 수출 4,500만달러, 수입 2,900만달러 수준이다. 2025년 12월 기준 세르비아는 한국의 102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세르비아의 45위 교역국이다. 한국은 세르비아에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세르비아는 기타금속광물과 곡류 등 1차 산품을 위주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 한·세르비아 교역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수출	금액	94	96	153	142	207	268	233	270	220	117	45
	증가율	28.8	1.5	60.2	△7.6	45.9	29.5	△12.9	16.0	△18.7	△19.5	6.8
수입	금액	44	65	61	241	168	210	181	122	273	110	29
	증가율	△62.3	48.1	△5.8	295.1	△30.3	25.3	△13.8	△32.5	123.1	△59.8	17.9
교역	금액	138	161	214	383	375	478	414	392	493	287	74
	증가율	△27.0	16.7	32.9	79.0	△2.1	27.5	△13.4	△5.3	25.8	△41.8	10.4
무역수지		50	31	92	△99	39	58	52	148	△53	67	16

단위: 100만달러, %(출처: 산업통상부)

산업부는 양국의 교역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직접수출 외에 인근 유럽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유럽 내 물류창고를 통해 세르비아로 수입되는 한국 기업 제품의 간접수입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은 무역통계 전문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철강제품(제72류·제73류)의 경우 세르비아의 수입 목록에는 있지만 한국의 수출 목록에는 없다는 점을 토대로 봤을 때 해당 물품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제3국의 중개 허브를 통해 선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의 대세르비아 주요 수출 및 수입품목 ●

순위	대세르비아 수출품목			대세르비아 수입품목		
	품목	수출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제85류 전자기기	133	△20.7	제10류 곡물	147	927.7
2	제84류 기계류	30	△4.8	제26류 광, 슬래그, 회	70	43.2
3	제39류 플라스틱제품	15	△11.7	제90류 광학정밀기기	13	△24.7
4	제90류 광학정밀기기	10	△6.5	제34류 계면활성제	13	11.1
5	제87류 자동차	9	△57.4	제85류 전자기기	11	101.6
6	제40류 고무제품	6	28.9	제62류 의류	4	△57.5
합계	-	220	△18.7	-	273	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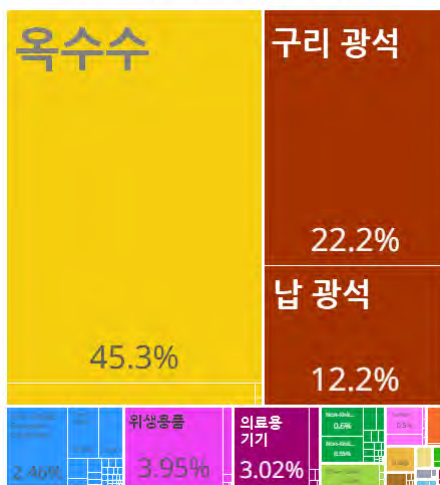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세르비아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누계 기준 한국의 대세르비아 투자는 총 23건, 4,960만달러 규모다. 최근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등 비셰그라드 그룹(V4) 국가의 임금 상승과 인력 확보 어려움이 커지면서 세르비아 투자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10년 진출한 유라코퍼레이션은 자동차부품을 생산 중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판매법인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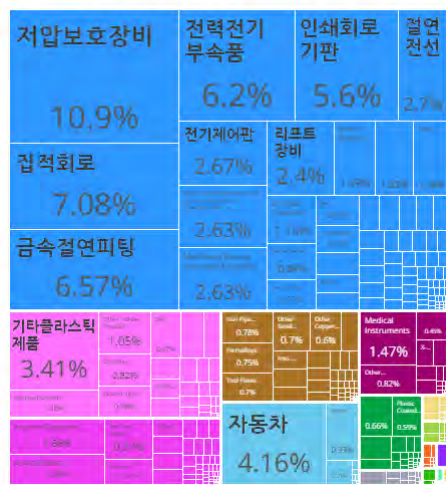
■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시장 개방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한·세르비아 CEPA의 가장 큰 성과는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이는 2024년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세르비아의 대한민국 수출



2024년 한국의 대세르비아 수출



양국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자료: 온라인데이터플랫폼 OEC,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특히 세르비아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으로 그동안 반도체와 전기전자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협정을 통해 관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우리 반도체·전자업계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시장도 개방된다.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라면, 조미김, 인삼, 커피믹스 등 K-푸드와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등 K-뷰티 제품을 세르비아로 수출 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방산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도 확보했다. KOTRA는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정보통신기술(ICT),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이 향후 CEPA 발효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은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세르비아는 유럽 내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이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광물 협력도 포함됐다. 양국은 리튬, 구리, 아연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AI와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도 경제협력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원산지 증명 부담 줄이고 신속통관 도입

부품과 재료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해 양국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역외산 재료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했다. 단, 신선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인삼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뒤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다. 또한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을 모두 허용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줄였다.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마련해 원산지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통관 분야에서는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했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명문화해 기업의 물류비용은 절감되고 통관 예측 가능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재산 침해 대응 규범을 도입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과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을 포함했다.

기술규제(TBT) 분야에서는 세르비아가 WTO 회원국이 아님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 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술규제 제·개정 시 사전 통보와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했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분야에서도 WTO SPS 협정을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통보 체계를 마련했다.

■ 투자보장협정도 발효... 투자 안정성 강화

CEPA 협상 타결과 함께 투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외교부는 6월 6일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같은 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23년 9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이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85개의 투자보장협정을 발효하게 됐다.

외교부는 세르비아가 발칸반도 중심부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보장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과 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르비아는 EU 미가입국이었어서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았고, 높은 관세가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대 12.5~1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던 자동차, 휴대폰, 전기전자, 화장품 등 주요 품목에서 CEPA 체결로 관세 혜택을 본다면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세르비아 CEPA와 관련해 향후 법률 검토와 협정문 번역, 정식 서명, 경제영향 평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필리핀 수출품목 17개 지정 및 한·UAE CEPA도 적용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6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와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와 관련 입증자료 등 기존 8종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 발효된 **한·필리핀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필리핀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17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별표2의2). 신규 지정 대상에는 페이스파우더, 네일에나멜, 모발용 제품 등 화장품류 4개 품목과 철강 및 철강제품 5개 품목 등이 포함된다. 또한 5월 1일 발효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활용 대상 협정으로 추가한다**. 대상 품목은 총 359개다.

관세청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도 개선한다(제28조 제2항 제1호). 현재 우리나라는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간을 계산할 때 선적일 포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해석이 달라 일부 국가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약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선적일을 제외하고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건에 대해서도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이와 함께 「관세법」 제327조 개정(2023.12.31.)에 맞춰 기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의 용어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

규정은 12월 4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의견은 6월 24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kym626@korea.kr)에 제출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9월부터 해외 직구 씨앗도 식물검역증명서 의무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량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월 5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품, 국제우편, 탁송품, 이사물품 등으로 반입되는 종자류(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와 수분용 화분(500g 이하)은 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제 교역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등 수입 금지 병원균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국내 유입될 위험이 커지면서 검역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6. 9. 5일부터 종자류·수분용 화분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입니다.

● ● 핵심 안내 ● ●

**종자류·수분용 화분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휴대
우편
탁송
이사물품

위 경로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주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폐기 또는
반송 대상입니다.

● ● 무엇이 달라지나요? ● ●

고시	기존	개정 후
제2026-21호	휴대·우편·탁송·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종자류·수분용 화분은 기존 수량 범위 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 가능	종자류·수분용 화분이 기준수량표에서 제외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을 수입할 때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반송 조치되며 해외에서 구매·발송하거나 휴대반입할 때도 적용된다.

| 서준식 기자 |

11월부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 시 동물검역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11일 전했다. 검역본부는 「사료·사료원료기구·깎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개정해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검역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수입 단계에서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 검사 대상 질병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수입업체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검역 신청 시 선적 전에 발급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 조건과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승인된 방사선 조사 처리 시설은 향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농관원, 염소고기 원산지 판별 기술 국내 최초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염소고기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립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염소고기 수입량은 2014년 1,436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약 5.7배 증가했지만,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별할 수 있는 공인된 판별 기술이 없어 원산지 표시 위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개발한 원산지 판별 기술은 동위원소비질량분석(IR-MS)과 DNA 유전자분석(SNP chip)을 결합한 방식이다. 동위원소비질량분석은 기후, 토양, 물, 사육방식 등 사육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C), 질소(N) 등 동위원소 비율의 차이를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국내산 염소는 곡물 보조사료를 활용한 관리형 사육 비중이 높고, 호주산은 목초 위주의 방목 사육이 일반적이어서 동위원소 특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 착안했다. 유전자분석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와의 협업으로 수행됐으며 국내산과 호주산 염소의 DNA 염기서열 차이를 활용한다. 농관원은 새로 개발한 기술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구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서준식 기자 |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기준 확정”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6월 18일 시행

정부가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사업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운영방안 등을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별법과 함께 6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대미 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 결정 절차가 구체화됐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됐다.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사업의 추진 의사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 추천 내용, 미국정부의 지원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으며,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적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으며, 기금 계정 상호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일인 6월 18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회 보고, 미국측과의 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철강관세·탄소규제는 완화 요청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통상과 공급망, 첨단기술,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을 계기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지역 투자 신고식과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정식 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우선 유럽 기업 4개사가 1억 6,5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는데, 그중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Orafol)은 2025년 인수한 국내 반사필름 기업의 공장을 증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EU와의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출처: 산업통상부)

이날 양측은 한·EU DTA에도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통상협정이며, 우리나라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데이터 플랫폼(UNCTADStat)에 따르면 EU의 디지털 방식 교역 가능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조 3,240억달러로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50유로 이하의 수입 전자상거래 물품 규모는 2022년 약 14억개에서 2025년 약 58억개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컴퓨팅 설비 현지화와 데이터 현지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EU 시장 진출 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수출입과 판매 과정에서 소스코드 이전이나 접근 요구를 제한해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보호도 강화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종이 대신 데이터 기반 문서와 양식을 사용하고 통관 시 요구되는 각종 다양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단일 창구에서 전자로 접수해 행정·통관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도 출범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통상·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혁신 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했으며, 기존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총괄하는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6월 11일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철강 분야에서는 글로벌철강포럼(GFSEC)을 기반으로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산업정책 현안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11일 브리핑에서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와 관련해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10일 발표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측이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WTO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산업부는 향후 국회 보고와 EU측 비준 절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한·EU DTA의 조기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최저"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5%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6월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2.9%)보다 0.4%p 낮은 2.5%로 제시됐다.

이번 전망치는 세계은행이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2.6%)보다 0.1%p 낮아진 수치다.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가정 아래 에너지 공급 회복과 통화 완화 재개, 무역 회복 등에 힘입어 2027년과 2028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2.8%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세계경제 전망의 위험 요인이 상방보다 하방에 더 크게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 교전 재개와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통화 긴축, 기후재해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추가로 0.4~0.8%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동반될 경우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와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원자재 수출 신흥·개도국의 재정운용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원자재 수출국의 재정수입과 기초재정지출은 5년 후 각각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은 기자 |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탄소배출 기준, 강제노동 검증 등 관세보다 더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연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수출 리스크를 짚어본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정부의 니켈 수출통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니켈 60% 생산국 인도네시아, 채굴 축소·수출통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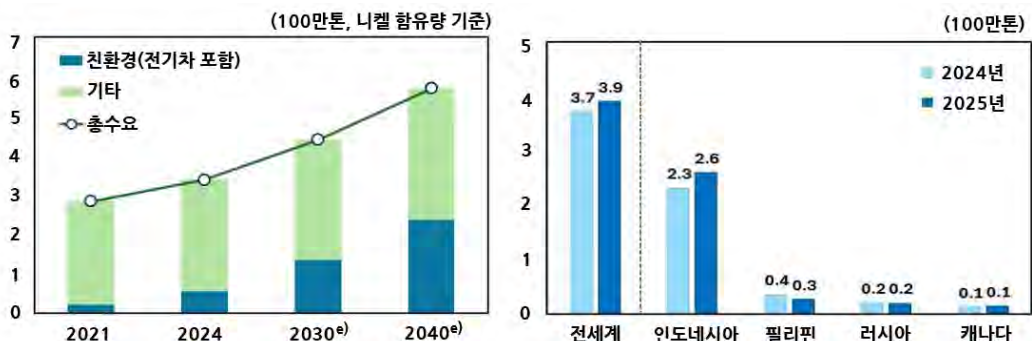
니켈 생산 쿼터 관리·중동 리스크 겹쳐... 배터리 공급망 긴장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채굴 쿼터 축소와 수출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니켈 생산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전략 원자재 수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5월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니켈은 배터리, 스테인리스강 등에 활용되는 핵심광물로 최근 전기차산업 성장과 맞물려 전략자산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니켈 수요 중 스테인리스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이며, 전기차 배터리(16%)의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향상에도 기여하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니켈 생산 비중은 2020년 31.5%에서 2025년 약 67%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니켈 원광(ores) 수출제한과 현지 제련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공급망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이어 전 세계적인 공급망 규제 흐름에 맞춰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니켈 수요(좌) & 글로벌 니켈 생산량(원광 기준) ●



출처: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자료: IEA, US Geological Survey)

국제니켈연구그룹(INSG)은 2026년 4월 22일 발표한 'INSG April 2026 Meetings' 자료에서 인도네시아가 2026년 들어 광업 부문 규제를 강화했으며, 2026년 니켈 광석 채굴 할당량(RKAB)을 2025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INSG는 정부의 수급 판단에 따라 향후 쿼터를 조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매체 로이터통신과 INSG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정부는 올해 니켈 광석 채굴 할당량을 약 2억 6,000만~2억 7,000만톤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약 3억 7,900만톤보다 크게 감소한 규모다.

채굴 쿼터 축소 이어 수출 중앙집중화 추진

인도네시아정부는 니켈 생산량 관리와 함께 원자재 수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지난 5월 20일 니켈 수출(원광 및 일부 중간재)을 정부 지정 국영기업을 통해 관리·통제하게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으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산하 국영기업인 '다난타라 숄버다야 인도네시아(DSI)'가 전략품목 수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6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정부가 6월 1일부터 석탄, 팜유, 합금철 등 전략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국영 수출기업 보고체계의 과도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에 따르면 과도기에는 기존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CEISA 4.0)을 통해 수출신고를 계속 수행하되, 전략품목 관련 수출 서류와 거래 자료를 DSI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카르타지부는 전면 시행되면 DSI가 주요 수출절차의 수행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이번 제도의 목적을 저가 송장 발행(Under-invoicing),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수출자료 불일치 등 무역거래 왜곡 방지와 원자재 수출가격 관리 강화라고 설명했다.

팜유 부문은 원유팜유(CPO)·식용유·폐식용유 등 파생제품이 포함됐으며, 석탄은 HS 제2701~2703호 계열, 합금철은 페로망간·페로니켈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관리 대상이 설정됐다.

다만 업계는 세부 운영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광업·석탄·니켈 제련·팜유 업계가 정부에 가격 검토 기준, 기존 계약 처리 방식, 결제 및 선적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산 공급난 겹치며 배터리용 니켈 생산 차질 우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망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6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황(Sulphur)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황은 배터리용 니켈 생산에 필요한 황산 제조의 핵심 원료다. 황산은 HPAL(고압산침출) 공정을 통해 니켈 광석에서 MHP(Mixed Hydroxide Precipitate) 형태의 배터리용 니켈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걸프 지역이 세계 황 공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황 수입의 약 75%를 해당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HPAL 설비 생산량이 약 45만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약 10만톤 규모의 신규 생산능력 확충이 예정돼 있었으나 황 공급난으로 일부 업체가 이미 생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MM(Shanghai Metals Market)이 6월 11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도 인도네시아의 2026년 4월 황 수입량은 전월 대비 28.6% 감소했으며, 중동산 황 수입 비중은 37.4%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으로 니켈 가격과 공급망 변동

니켈 시장은 공급 부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NSG는 4월 22일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 1차 니켈 생산량이 2025년 388만톤에서 2026년 371만 5,00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요는 359만 6,000톤에서 374만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니켈 시장 수급은 2025년 28만 3,000톤 공급과잉에서 2026년 3만 2,000톤 공급부족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니켈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인도네시아가 이번 조치로 니켈 생산부터 수출·유통·가격까지 통제함에 따라 글로벌 니켈 시장 내 가격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니켈 조달, 제련, 배터리 소재·셀 생산을 해온 만큼 공급망 통제력이 인도네시아·중국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니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선물가격은 2026년 5월 5일 장중 톤(t)당 1만 9,642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포브스는 9일 보도에서 인도네시아의 채굴 쿼터 정책, 수출통제 강화, 황산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원료 공급망과 니켈 가격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광물연료와 팜유가 전체 수출의 약 31%를 차지하는 자원 중심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1위 니켈 매장국이자 세계 2위 주석 매장국이며 한국의 주요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연탄, 천연가스, 동광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2022년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에 ASEAN 첫 완성차 공장을 완공했고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은 카라왕 산업단지에 2024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 김성은 기자 |

박주현의 통상 인사이트

본지 제2122호(2025년 3월 17일자)부터 '박주현의 워싱턴 통상'을 통해 미국 통상정책의 현장을 전해온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박주현의 통상 인사이트'를 새롭게 연재한다. 워싱턴 D.C. 연수와 미국 로펌 DLA Piper LLP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는 물론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공급망, 관세 및 통상규제 등 주요 이슈를 폭넓게 분석한다. 워싱턴 현장 경험과 국제통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할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확산되는 반덤핑조사 도미노 "한국, '결다리'에서 '표적'으로"

- 철강·화학을 가로지르는 최근 무역구제 동향과 대응 과제



박 주 현 |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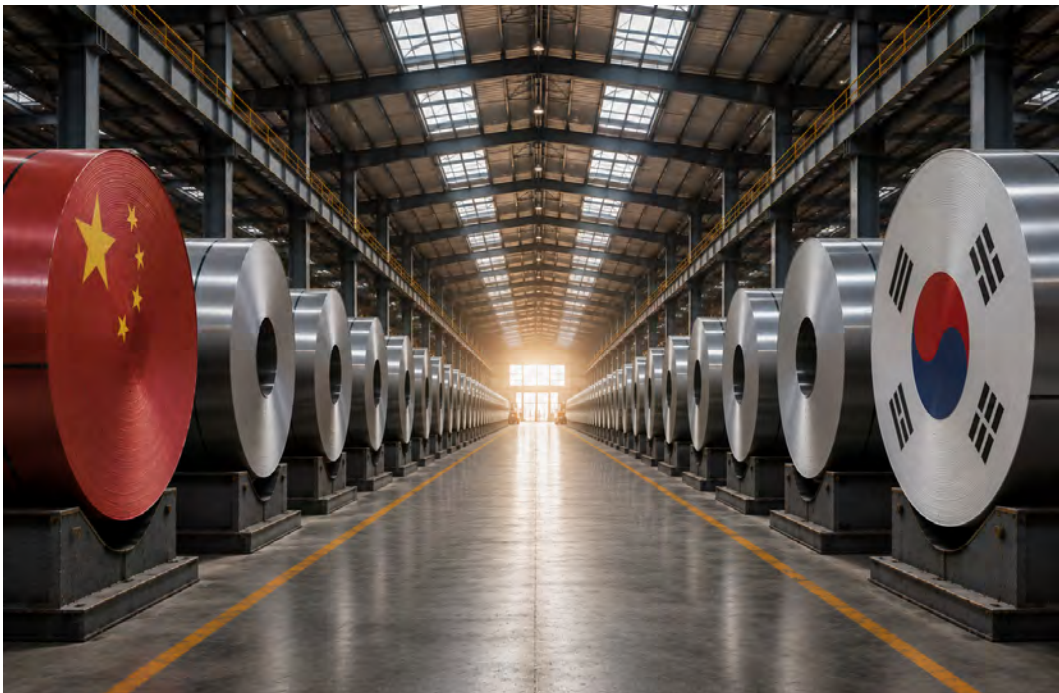
2025년은 무역구제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내놓은 철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누적된 전 세계 철강 분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2025년 기준 395건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직전 해의 321건에서 한 해 만에 가파르게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눈여겨볼 대목은 총량이 아니라 표적의 분포에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113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잇는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다. 41건으로, 베트남(33건)을 앞선 세계 2위다. 조사 주체별로는 미국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64건, 호주 46건, EU 32건이 뒤를 이으며, 이 네 곳이 전 세계 조치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¹⁾

시야를 넓혀도 그림은 다르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상 한국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509건의 반덤핑 피소를 기록해, 중국(1,780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사를 받은 나라다. 숫자만 보면 제조강국이 치르는 익숙한 비용처럼 보일 수 있다.

1) OECD 원문(oecd.org/en/publications/oecd-steel-outlook-2026).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 한국을 향한 무역구제의 '양상'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 생산자는 더 이상 중국을 겨냥한 조사에 걸가지로 함께 걸리는 부수적 피해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조준되는 표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사의 주체도, 대상 품목도, 동원되는 법적 논리도 빠르게 다변화한다. 이번 호에서는 철강과 화학을 가로지르는 최근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변화의 실체를 짚고, 한국 생산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결다리'에서 '표적'으로: 달라진 세 가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과거의 전형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인도·EU 등 무역구제를 자주 활용하는 시장이 철강과 화학을 중심으로 조사를 제기하면, 한국은 중국과 한 묶음으로 '공동 피소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곤 했다. 조사의 진짜 표적은 중국이었고, 한국은 그 그물에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변화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독자적 표적화다. 일본은 2026년 6월 한국·중국·대만산 열연·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도금강판에 이어 한국산 강재를 2년 연속 정면으로 겨누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5월 한국·튀르키예·베트남·인도산 코팅 탄소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제품을 직접 표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둘째는 조사 주체의 다변화다. 전통적 다용국에 더해, 그동안 한국산을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않던 시장들이 새로 가세하고 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산 강재를 겨냥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한동안 보류했던 무역구제 절차를 전면 재가동했다. 뒤에서 보듯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의 신흥 시장으로도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셋째는 법적 논리의 진화다. 단순한 ‘저가 판매(덤핑)’ 주장을 넘어, 보조금(상계관세) 영역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한국 기업에까지 미쳤다”는 이른바 초국경보조금 논리가 실제 판정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원의 주체 역시 정교해졌다. 미국의 PTMEG(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 사건에서는 미국 내 유일한 생산사이자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BASF)의 미국법인이 청원인으로 나서면서, 조사 대상에 자사인 BASF의 한국법인까지 포함되는 이례적 구도가 나타났다.

3. 도미노의 실체: 중국발 공급과잉의 전이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동인은 하나다.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가 위축되자 중국의 잉여 생산은 수출로 쏟아졌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무역마찰로 번졌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Platts)과 중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주요 무역구제 제소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2월 사이 약 29건에 이르러, 직전 4년(2020~2023년)의 15건을 크게 웃돌았다.²⁾

중국의 2024년 철강 수출은 약 1억 1,070만톤으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9.2%(5,815만톤) 늘었다. 일례로 베트남은 2023년 이후 중국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올라섰는데, 그 물량은 2023년 약 925만톤에서 2024년 1,274만톤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한 시장에 집중된 물량은, 그 시장이 빗장을 거는 순간 곧바로 이웃 시장으로 방향을 튼다.

문제는 관세가 과잉생산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는 데 있다. 관세는 무역의 흐름을 바꿀 뿐이다. 한 시장이 문을 닫으면 갈 곳을 잃은 물량은 다른 시장으로 흘러가고, 그 시장이 다시 장벽을 세우면서 조사가 연쇄적으로 번진다. 실제로 2025년 초에만 베트남·한국·콜롬비아·EU·말레이시아가 잇따라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것이 ‘반덤핑조사 도미노’의 실체다.

한국 생산자가 이 도미노에 휩쓸리는 경로는 세 갈래다. 첫째, 중국과 함께 공동 피소국으로 묶이는 경우, 둘째, 중국산 소재나 반제품을 가공해 수출한다는 이유로 우회나 보조금 의심을 받는 경우, 셋째, 한국 자체가 중국산의 우회 경로로 지목되는 경우다. 요컨대 한국은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구조적으로 표적이 되기 쉬운 위치에 서 있다.

2) S&P Global Commodity Insights(Platts), "China's steel exports face rising trade barriers as antidumping cases surge", 2025. 2. 25., (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metals/022525-chinas-steel-exports-face-rising-trade-barriers-as-antidumping-cases-surge)

4. 분야별 반덤핑조사 동향 분석: 전선이 전 대륙으로 확장

1) 철강

앞서 언급한 일본과 우크라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일본 사건은 일본제철·JFE스틸·고베제철이 2026년 2월 신청한 것으로, 수입가가 정상가보다 최대 50%까지 낮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일본의 반덤핑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종결되는 속전속결 구조여서, 초기 질의서 대응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우크라이나 사건은 현지 생산자인 모듈-우크라이나(Modul-Ukraine) 등의 제소로 시작됐으며, 개전 이후 멈췄던 조사·재심을 전면 재개하는 흐름의 일부다.

북미로 눈을 돌리면 캐나다가 두드러진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25년 5월 중국·한국·튀르키예·베트남산 강철 스트래핑(strapping)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중국에는 상계관세 조사를 병행했다), 2026년 1월 최종판정과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피해판정이 이어졌다. 제소는 현지 업체인 JEM Strapping이 제기했다. 캐나다는 앞서 본 OECD 집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많은 나라(64건)인 만큼, 한국 기업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관할이다.

동남아시아의 전선은 이미 활성화돼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현지 업체 CSC Steel의 제소를 받아 2025년 2월 중국·한국·베트남산 아연도금 강판·시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3.86~57.90%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도 2024년 6월 중국·한국산 도금강에 대한 조사(이른바 사건번호 AD19)에 들어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매겼고, 별도로 한국·중국산 도장 평판강에 대한 일몰재심을 진행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의 행보가 눈에 띈다. 브라질은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우크라이나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25년 9월 연장·확대하면서 관세를 큰 폭(약 200%)으로 인상했다. 인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은 다수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의 장기 반덤핑 조치에 포함된 채 재심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무역구제를 가장 많이 적용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철강의 전선은 동아시아와 유럽 반경, 북미, 동남아, 중남미, 남아시아를 하나의 띠처럼 두르고 있다.

2) 화학

화학 분야의 전선은 철강만큼 요란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광범위하다. 미국은 그 중심에 있다. 미 상무부(DOC)는 2026년 5월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한국산 추정 마진은 49.79~137.64%에 이른다. 앞서 2025년 말에는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예비판정에서 협조 기업에 10.94~65.72%,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해 188%라는 고율이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 사례 가운데 가장 시사적인 것은 에폭시 수지 건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5년 4월 한국·대만·태국산 에폭시 수지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정했고(중국·인도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상무부는 한국·대만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함께 발령했다. 상계관세 명령은 2025년 5월 발효됐다. 한국 측 피조사 대상기업 중 하나는 그 판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주목할 점은 상무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이 한국의 원료 시장을 왜곡했는지', '중국의 보조금이 한국 기업에 미친 초국경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보조금 논리가 한국 기업에까지 직접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뒤에서 다룰 '새로운 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유럽도 움직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대만산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에 대해 2025년 8월 잠정관세에 이어 2026년 2월 확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에 대한 세율은 5.2~7.5%다. 인도는 화학 분야의 상시 전선이다. 한국산 PVC 현탁수지는 중국·인도네시아·일본·대만·태국·미국과 함께 조사돼 2025년 8월 최종판정을 받았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산 관세는 톤(t)당 49~148달러 수준으로 제안됐으며, 제소는 현지 업체 кем플라스트(Chemplast) 등이 주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베트남·아랍에미리트·말레이시아·싱가포르산 PP(폴리프로필렌) 코폴리머에 대한 반덤핑 절차가 부처 간 협의 단계에 있어, 전선이 석유화학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5. 새로운 무기들: 초국경보조금·AFA·방법론

최근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조사 당국이 동원하는 '무기'가 한층 다양하고 공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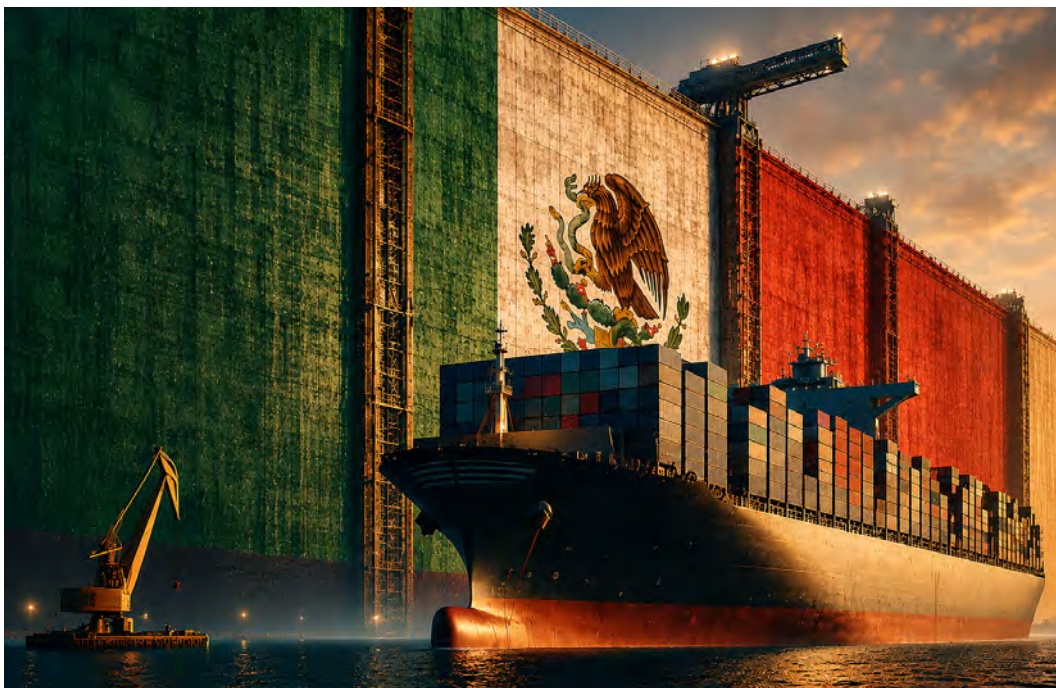
그 첫째가 앞서 본 초국경보조금이다. 전통적으로 보조금 조사는 수출국 정부의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 에폭시 사건처럼 '제3국(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조사 대상국(한국)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줬다'는 논리가 실제 판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얹힌 만큼, 중국산 원료나 반제품을 쓰는 한국 기업은 이 논리에 노출되기 쉽다.

둘째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다. 미국 모노머 사건의 188% 관세가 보여주듯,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조사 당국은 청원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다. 한 자릿수와 세 자릿수 마진의 차이가, 실은 자료 한 줄의 누락에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는 정상가 산정의 방법론이다. 미국은 한국에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가장 빈번하게 적용해 온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는 외국 수출자에게 밸류체인이 완전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관할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담을 지운다. 이러한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마진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넷째는 청원 구조의 고도화다. 앞서 본 BASF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내부에서조차 청원이 제기되는 시대인 만큼, 더 이상 '경쟁사의 견제'라는 단순한 도식만으로 사건을 읽어서는 안 된다.

6. 신흥 시장의 절차적 함정



출처: AI 생성 이미지

전선이 신흥 시장으로 넓어질수록, 각국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곧 방어 of 출발점이 된다. 익숙한 미국·EU의 틀이 그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우, 반덤핑 조사는 경제부(SE) 산하 국제무역관행국(UPCI)이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수행한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개시 후 약 28영업일로 촉박할 뿐 아니라, UPCI가 정상화 산정에 국내 산업의 원가 구조를 활용하는 등 마진을 부풀리는 경향이 지적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양자 패널 불복 절차가 미국·캐나다산 물품에만 열려 있어 한국 기업은 이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 기업의 불복 트랙은 멕시코 국내 법원이나 WTO로 좁혀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둔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반덤핑위원회(KADI)가 조사를 수행하고, 무역부의 승인을 거쳐 재무부가 반덤핑 관세(BMAD, Bea Masuk Anti-Dumping)를 부과하는 구조다. 흥미로운 것은, KADI가 관세 부과를 권고하더라도 정부가 국내 공급 사정이나 산업 구조 같은 공익적 이유로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산업·통상 정책 차원의 대응 여지도 크다.

베트남은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구제국(TRAV)이 조사를 맡으며 답변 기한이 통상 30일 안팎으로 짧다. 말레이시아는 투자통상산업부(MITI)가 1993년 상계·반덤핑관세법에 따라 조사하며, 잠정 관세 부과 후 120일 안에 최종판정을 내리는 구조다.

브라질은 무역방어공익소위(SDCOM)가 조사한 뒤 대외무역위원회 집행위(GECEX/CAMEX)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공익(public interest) 심사가 조사 절차에 통합돼 있어 부과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지렛대가 존재한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 공익 논거를 초기에 설계해 둘 가치가 있다.

7. 칼끝의 양면: 한국의 공세와 수세, 그리고 대응

흥미롭게도 한국은 같은 도미노 속에서 '피소국'이자 동시에 '제소국'이라는 양면적 위치에 서 있다. 한국 무역위원회(KTC)는 일본·중국산 열연강에 최대 33%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고, 포스코의 제소로 베트남산 냉연 스테인리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2026년 2월에는 중국과의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으로 한 철강 사건을 매듭짓기도 했다. 2025년 국내 기업이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고, 대상도 산업용 로봇 등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이 공세가 곧 위험이기도 하다. 한국이 중국산에 칼을 댈수록, 갈 곳을 잃은 중국 물량은 제3시장으로 더 밀려나 그곳에서 한국과 함께 규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산의 우회 경로로 의심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한국 생산자는 공세와 수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제소 전 단계부터의 모니터링이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제소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는 관할에서는, 국내 산업의 제소 동향과 신호를 스스로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조기경보다.

둘째, **원가·판매 자료의 상시 정비다**. 조사 일정은 늘 촉박하고, AFA의 위험은 자료의 완성도에서 갈린다.

셋째, **소재 조달과 원산지의 추적이다**. 우회와 초국경보조금 방어를 위해, 어떤 원료를 어디서 들여오는지를 품목별로 문서화해야 한다.

넷째, **품목·모델별 마진 노출의 사전 시뮬레이션이다**. 어느 제품이 원가 미만 판매 문제나 고마진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미리 파악하면, 조사가 시작된 뒤의 대응 폭이 달라진다.

다섯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관할에 걸친 조사를 하나의 일관된 전략으로 묶는 일이다**. 같은 '중국 도미노' 한 줄기에서 비롯된 사건들을 4~5개국에서 제각기 다른 논리로 따로 방어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노출이 현실화하기 전에 기업별 노출 지도를 그려 두는 것, 그리고 경험 있는 대리인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국 결과를 가른다.

이 과정에서 정부 채널의 활용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인도의 한 철강 무역구제 사건에서는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17개 품목이 추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무역위원회 등과의 조기 협의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결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8. 다음은 어디인가: 향후 6개월의 관전 포인트

그렇다면 도미노의 다음 칸은 어디일까. 신호는 비교적 뚜렷하다. 첫 번째 후보는 멕시코다. 현재 멕시코의 열연강 조사는 현지 업체 테르니움(Ternium)의 제소로 중국·베트남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은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열연·냉연·도금강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 그리고 멕시코가 중국산의 우회 경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한국이 추가되거나 후속 조사가 제기될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다. 앞서 본 PP 코폴리머 사례는 전선이 철강을 넘어 석유화학으로 번지는 신호이며,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모두 중국산 철강의 급증을 겪어 온 만큼 역내 조사의 연쇄가 충분히 예상된다. 실제로 호주는 2026년 5월 중국산 열연강에 최대 82%의 관세를, 튀르키예는 2025년 12월 중국산 일부 철강에 3.95%의 관세를 부과했다. 선진·역내 시장이 차례로 빗장을 걸수록 갈 곳을 잃은 물량의 압력은 더 커지고, 그 끝에서 한국이 함께 휩쓸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여기에 미국이 보조금·우회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향후 6개월의 그림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논리'로 요약된다.

9. 맺으며

결국 한국 생산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조사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다음은 어느 시장이며, 우리는 그곳에 준비돼 있는가'로 바뀌었다. 반덤핑 조사 도미노는 이미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와 동남아, 중남미를 가로지르고 있고, 그 다음 칸은 멕시코나 인도네시아처럼 중국산이 우회·집중되는 시장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이 도미노는 개별 사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조치가 다른 나라의 조사를 부르고, 한 품목의 전례가 인접 품목으로 옮겨 간다. 그렇기에 대응 역시 사건 단위가 아니라 '노출의 지도'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 어느 시장에서 어떤 품목이, 어떤 원료 구조와 어떤 가격대로 노출돼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기업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기업의 결과는 같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무역구제가 더 이상 '걸리면 그때 대응하는' 사후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품목이 어느 시장에서 어떤 논리로 표적이 될지를 미리 읽고, 자료와 전략을 갖춰 두는 기업만이 그 충격을 견딘다. 도미노의 끝에서 허둥대지 않으려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 수입통관 시 분석 의뢰

수입통관 시 어떤 경우에 분석 대상으로 지정되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 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분석합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분석의뢰) 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중략> ...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분석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FTA /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국 원양어선이 러시아경제수역 태평양에서 어획해 머리 및 내장 제거·절단 등 가공작업을 거친 냉동 동태를 호주로 수출할 경우
한·호주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호주 FTA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바호 및 사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에 해당할 때는 완전획득물품으로 간주돼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조(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제3.1조 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중략> ...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登記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
 사. 바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登記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등록된 선박에 의해 한국 국기를 게양하고 영해 밖에서 명태를 어획해 한국의 가공선박에서 머리 및 내장제거, 절단 등 가공 작업을 한 물품이라면 한·호주 FTA C/O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후검증에 대비해 C/O 발급일로부터 5년간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업허가증, 제조공정도 등을 보관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특수통관 / 타투 기계 해외 직구

타투 기계를 해외 직구할 수 있을까요?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수입요건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타투 기계는 대략적으로 HS Code 제9018.90-8900호(그 밖의 의료기기)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법」에 해당되는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 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가사용 목적 요건 면제 가능 여부 등 「의료기기법」 관련 문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소관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02-596-7404)

수입 / 소변기의 수입요건

HS Code 제3924.90-9000호에 분류되는 소변기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제3924.90-9000호에 분류되는 소변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표준통관예정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다음의 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생리컵

□ [수입승인서]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선태제거기

관세평가 / 과세가격

A사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B사에 양도했습니다.

A사는 해외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 대신

마진을 추가해 A사 명의의 새로운 인보이스를 B사에 발행했습니다.

이때 새롭게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보세구역 반입 후 재판매돼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된 당초의 거래가격(해외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판매자가 A사에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이 이에 해당하며, A사가 B사에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B사가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2~6방법)까지의 평가 방법을 차례대로 검토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검사 지휘로 폐기된 가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53(2025.12.24.) 대상결정

최 천 식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

I. 머리말

현대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경 단계의 핵심적인 통제 요소 중 하나다. 수입자는 해외 거래처를 신뢰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반입하지만, 수입 후 예상치 못한 가품 판정으로 인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수입자가 해당 물품에 납부한 관세는 과연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해당 물품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폐기돼 국내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환급요건 불충족이라는 이유로 관세 환급마저 거부된다면 수입자는 이중의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나타난 관세 행정의 엄격성과 그 이면에 가려진 납세자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23.9.14. ○○○ 소재 (주)A가 B에게 공급한 ○○○ 상표가 부착된 패딩(남성용 패딩 119점 및 여성용 패딩 110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B로부터 구매해 수입통관했다. 세관장은 202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 중 남·여 패딩 각 1점을 채취한 후, 국내 상표권자인 C사에 감정을 의뢰해 위조품이라는 회신을 통보받고 2024.4.23. 쟁점물품을 압수해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했다. 세관장은 2024년 7월경 관할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법인 소속 직원 a와 (주)A 대표를 가품 ○○○패딩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고, 관할지방검찰청장은 2024.9.30. 불기소결정을 했으며, 세관장은 2025.2.26. 관할지방검찰청장의 2024.10.8.자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 처분했다. 청구법인은 2025.4.18. 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2025.4.21.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했다.

III.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관장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청구법인은 위약수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폐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신고하고 반입한 후 수출(폐기)절차를 진행해야 위약수출(폐기) 환급요건이 충족되므로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쟁점물품에 대해 환부를 받았을 경우 압수창고로부터 반출해 바로 폐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세창고로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협의했으나, 세관장은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환부결정이 있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할지방검찰청장에게 쟁점물품이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혐의 없음)된 물품으로서 환부를 요청했으나, 관할지방검찰청장은 이를 불허했고, 세관장은 관할지방검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 처분했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해 세관장이나 관할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위약수출하거나 폐기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장치물품 폐기대상 및 리콜대상이 아닌 압수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도 없었고 반입할 의무도 없었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유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폐기로 인해 과세물건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했다.

(1) 쟁점물품 중 30점이 2023.10.22.부터 2023.12.15.까지 판매 완료됐고, 쟁점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된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29.부터 2024.2.11.까지 판매된 쟁점물품 30점에 대해서 28점은 환불조치하고, 2점은 동일 모델의 진정상품으로 교환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외 쟁점물품(196점)은 판매되지 않았고, 국내에 유통도 되지 않았다.

(2) 「관세법」 제46조 제1항 후단에서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납세업무고시’라 한다) 제71조 제4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를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 제14조에서는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물건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함께 과세의 4대 요소 중 하나다.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나 쟁점물품은 세관장에 의해 압수된 후 폐기된 물품으로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필수 과세요건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또한 「관세법」 제238조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으로 반입된 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쟁점물품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이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압수된 물품으로 세관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폐기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폐기된 사실,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 필수 과세요건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당초의 수입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완료됐고, 수입신고 수리 후 자유롭게 유통됐으며,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보관되고 있었으므로 이후에 반품 또는 압수·폐기됐더라도 유통됐다는 사실까지 소급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가품으로 판정돼 국가기관인 세관에 의해 압수·폐기된 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통·소비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물건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했다. 세관에 의해 쟁점물품이 폐기됐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쟁점물품(226점)이 모두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6)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해 관세 등 제세의 과오납금도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사실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4조는 이 건 환급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압수돼 폐기된 물품으로 같은 법 제238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는 본질적으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다면 수입 당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는 부패, 변질, 손상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고, 압수물품 폐기는 해당 물품이 법령상 생산, 소지, 유통이 금지된 경우에 이뤄져 그 성격이 다르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는 화주 등이 폐기 신청해 승인받아 이뤄지고, 압수물품 폐기는 폐기처분 지휘(명령)에 의해 이뤄지므로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폐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

쟁점물품은 가품으로 국내에서 실제로 소비되지 않았고, 서울세관장이 직접 폐기했으므로 「관세법」 제238조의 취지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인정한 처분청은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 환급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환급 사유에 해당하

는 것으로 봐 환급을 해야 함에도 쟁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과세 목적(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제3항 및 「납세업무고시」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또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고시」 제79조에서는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9조(환급요건)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2.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3. 수출 갈음한 폐기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

(3) 위 규정 취지에 비춰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가품으로 확인됐고, ② 폐기 당시 수입신고 때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이었으며, ③ 가품으로 관할지방검찰청장이 폐기를 지휘했으므로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④ 2024.4.23. 압수돼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됐다가 폐기됐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보세구역이 아닌 압수창고에 쟁점물품을 반입하고, 그 폐기도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폐기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 구역 반입’이라는 요건은 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압수해 보관창고에 반입한 시점(2024.4.23.)을 기준으로 이미 충족됐고, 세관장의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가품을 국내 유통 시장에서 배제하고 국가 통제하에 폐기한 장소라는 점에서 ‘보세구역외 장치장소’ 등 실질적인 보세구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 또한, 폐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폐기하면 수출에 갈음한 폐기요건을 충족하도록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IV.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돼 국내 유통 중에 범칙물품으로 압수됐다.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해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됐다.

한편, 관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했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압수된 후 폐기돼 국내에 유통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2023.9.14. 수입신고돼 같은 날 수리됐고, 2023.9.18.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후에 청구법인의 여주센터로 배송됐으며, 2023.10.22.부터 6개 점포로 배송 및 판매가 시작돼 이 중 30점이 2023.10.22.부터 2023.12.15.까지 판매됐다. 청구법인은 2023.12.29.부터 2024.2.11.까지 쟁점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된 후 판매된 30점에 대해서 28점은 환불 조치하고, 2점은 동일 모델의 진정상품으로 교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쟁점물품은 2024.4.23. 서울세관장에게 압수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에 보관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자유롭게 유통됐으며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보관되고 있었으므로, 이후에 반품 또는 압수·폐기됐다고 하더라도 유통됐다는 사실

까지 소급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엄격해석 원칙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압수된 후 폐기된 물품으로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수입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야 한다. 「관세법」에서는 제세 등의 환급과 관련해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와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46조 및 「납세업무고시」 제71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결정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하거나(과납의 경우), ②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 납부했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③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결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④ 법 제4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⑤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쟁점물품 수입신고는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그대로 납부했기 때문에 과납이나 오납에 해당하지 않고, 세관장이 경정을 취소했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돼 수입신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 등 제세의 과오납금도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요건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환급세액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반입한 시점을 보세구역 반입 시점으로 간주해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한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으로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은 환급요건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2023.9.14. 수입신고 수리돼, 2024.4.23. 범칙물품으로 서울세관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입고됐고, 2025.2.26. 폐기됐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154조에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각의 보세구역은 장치, 제조, 판매, 전시 및 건설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로서 세관장은 그 설치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하는지를 감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반면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범칙사건과 관련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돼 압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 운영하는 장소다.

(3) 청구법인은 「납세업무고시」 제79조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해 압수물품 보관창고를 ‘보세구역의 장치장소’ 등 실질적인 보세구역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업무고시」 제79조에서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보세구역에는 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장소는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의 장치를 허가한 장소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비춰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크기나 무게의 과다)과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4) 보세구역과 압수창고는 설립 및 운영 목적이 상이하고 이러한 운영 목적을 이 건에 적용하면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해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했을 때란, 그 문언 그대로 보세구역에 반입해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보세구역이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하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수출을 같음한 폐기물품 환급에 대한 환급요건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이란 압수창고가 아니라 보세창고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그 문언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압수창고에 반입하고 그 폐기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폐기됐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V.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1. 쟁점

압수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 지휘로 폐기된 가품을 수출에 같음해 폐기된 것으로 봐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23년 12월 국내 매장 진열 과정에서 여성용 패딩 모자 부분의 단추 불량이 확인돼 국내 사설 감정업체에 쟁점물품의 진품 여부를 감정 의뢰해 가품으로 판정되자, 기존에 판매했던 30점에 대한 회수·교환 조치를 했고, 2023.12.29. ○○○에서 판매해 온 ○○○패딩 2중에 대해 가품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 세관장은 202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고, 쟁점물품 중 남·여 패딩 각 1점을 수거한 후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상표권자에게 진정상품 감정을 요청했으며, 해당 물품의 상표권자인 C사는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4년 3월경 D사로부터 쟁점물품 전량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검사를 하겠다는 문서를 접수했고, D사는 2024.4.2.부터 2024.4.4.까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에서 쟁점물품 전량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별도로 C사의 국내 지식재산권 법적 대리인에게 모델별 샘플 패딩 4점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다. D사는 2024.4.24. 청구법인에게

검사 결과 224점 모두 ‘이상 있음’으로 회신했고, C사의 법적 대리인도 2024.4.29. D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샘플 ○○○패딩 4점이 모두 가품이라고 회신했다.

세관장은 청구법인 및 소속 직원 a팀장(쟁점물품의 해외 구매 총괄)과 쟁점물품을 ○○○ 현지에서 B에게 공급한 (주)A 및 대표 b를 가품 ○○○패딩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하고 쟁점물품은 2024.4.23. 압수해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했다. 세관장은 2024년 7월경 피의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들이 「상표법」 위반물품을 고의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봐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업체 및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관할지방검찰청장에게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관할지방검찰청장은 2024.9.30. 피의업체 및 피의자의 「상표법」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했고, 2024.10.8.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폐기할 것을 지휘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할지방검찰청장에게 쟁점물품 환부를 요청했으나, 관할지방검찰청장은 이를 불허했고, 세관장은 2025.2.26. 관할지방검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 처분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압수·폐기돼 과세물품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상실해 당초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하고 「관세법」 제46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환급요건도 충족하므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판매가 이뤄졌고, 이후 보관·유통 중에 가품으로 확인돼 세관장에 의해 압수·폐기됐으므로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납세신고한 세액과 동일하게 세액을 납부해 과다 납부한 사실이 없고,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해 달리 과오납금을 확인해 경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관세법」 제4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나 쟁점물품을 보관했던 세관 압수창고는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세관장이 관할지방검찰청장의 2024.10.8. 내린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I. 평석

1. 엄격한 「관세법」 해석에 치중된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의 대상 결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을 가감 없이 투영하고 있다.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환급요건, 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반입’과 ‘세관장의 사전 폐기 승인’이라는 절차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본 사건이 법문상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이 너무나 명백하며, 처분청의 환급 거부 처분도 법리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의 해석이 오로지 문언의 자구에만 매몰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외면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가품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판매 중단과 자발적 회수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압수라는 강제력이 개입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점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거나 세관장에게 폐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음을 의미한다. 결국, 수입자가 환급요건을 갖추고 싶어도 갖출 수 없는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환급 거부 처분을 유지한 것은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다소 경직된 판단이라 사료된다. 법의 목적이 조세정의의 실현에 있다면, 때로는 문언의 틀을 넘어 납세자가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포용하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관세평가 측면에서의 불합리

관세평가의 대원칙은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actual value)’를 관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 사건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1) 관세평가 제1방법(거래가격)의 성립 전제 상실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제1방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원칙의 대전제는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과 수입된 물품의 실질적 가치가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돼 물품의 경제적 효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진정상품의 가치를 전제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반입된 물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조품(가품)'이었다. 이는 계약의 핵심적 목적물에 중대한 착오 또는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수입자가 지급한 가격은 가품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진품의 허상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상표법」 및 「관세법」상 유통이 전면 금지된 위조품은 법률적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소각을 위한 폐기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영(0)'이거나 오히려 '부(-)의 가치'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진품의 가치를 가품에 강제로 투영해 당초의 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것은 담세력이 없는 대상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의 공평부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제적 실체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만을 고수하는 것은 과세물건이 부존재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관세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실제 수입된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확정하는 행위이나, 이는 해당 물품이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효용을 체화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본 사건과 같은 가품 수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평가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첫째, WCO 해설(Explanatory) 3.1 적용의 전제 조건 위배다. 해설 3.1은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goods not in accordance with contract)'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여전히 법적·경제적으로 유효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물품의 효능성이 존재하기에 그 가치를 감액하거나 대체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상 유통이 전면 금지된 위조품은 법률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이므로, 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WCO 해설 3.1의 논리적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물품 정체성의 근본적 상실과 관세평가 영역의 이탈이다. 수출자의 사기적(fraud)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 물품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물품이 반입된 경우, 이는 관세평가(valuation)의 문제를 넘어 과세물건의 부존재 문제로 직결된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의류를 주문했으나 고의로 산업쓰레기가 반입돼 전량 폐기된 경우, 이를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가치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관세평가는 실제 수입한 물품에 가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수치를 확정하는 과정인데,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폐기의 대상이 될 뿐인 물품에 대해 가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셋째, 무가치한 불법 물품에 대한 평가의 무의미성이다. 허가받지 않은 마약이나 유해 폐기물의 수입 거래에서 그 물품 가격을 평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무의미하듯, 가품 또한

국가가 강제로 압수해야 할 물품으로 그 과정에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박탈되고 소각되어야 할 불법적 존재에 불과하다. 법적 거래가 불가능해 시장가격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당초 진품을 상정해 지급한 대금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결국 가품 수입 사건은 물품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대상으로서의 실체적 물품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의 귀책 없이 반입된 가품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폐기됐다면 이는 관세평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사라진 과세 원인 상실의 상태로 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2) 과세가격의 객관적 수용성 결여 및 행정의 일관성 상실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의 근간은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처분청이 취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세물건의 가치에 대한 처분청의 자기 모순적 판단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상표법」을 위반한 가품으로 확정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직접 폐기처분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이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유통이 불가능하며 교환가치가 전무(全無)한 물품임을 국가기관 스스로 공인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단계에서는 이를 진정상품과 동일한 효용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법적·경제적 가치를 상반되게 평가하는 모순적 행정이다.

둘째, 국가 행정의 금반언(禁反言)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다. 과세관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행하는 결정과 모순되는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세관장이 쟁점물품의 가해성(加害性)과 무가치성을 이유로 ‘폐기’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물품의 담세력 또한 상실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에 부합한다. 가품으로서의 폐기 결정과 진품으로서의 관세 부과를 병행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정이며 이는 조세 행정의 객관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3) 실질과세 원칙 및 ‘성질과 수량’의 해석방법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지만 그 성질이 신고 당시와 판이하게 다른 가품임이 사후에 판명됐고 그 결과가 수입자의 귀책이 아닌 국가에 의한 강제 폐기로 이어졌다면 이는 과세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

만일 청구법인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저가 신고를 했다면 포탈죄가 성립하겠지만, 선의의 수입자가 진품 가격으로 오인해 신고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 물품의 효용을 완전히 박탈했다면, 관세평가상 과세표준은 실질적으로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환급요건 불충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충돌

관세는 본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에 의해 소비 또는 사용될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관세행정의 대원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비추 볼 때, 본 사건의 환급 거부 처분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소비 가능성의 원천적 차단이다. 관세 부과와 정당성은 해당 물품이 수입국 내 경제권 내로 유입돼 효용을 창출한다는 전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수입 후 가품으로 판명돼 국가기관인 세관에 의해 압수됐고 이후 공권력의 집행하에 폐기 처리됐다. 이는 쟁점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거주자에 의해 소비될 가능성이 물리적·법률적으로 완전히 소멸됐음을 의미한다. 소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과세권을 고수하는 것은 조세의 근거가 되는 담세력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관세의 부과 목적을 상실한 과세 행정이다.

둘째, 절차적 형식주의에 함몰된 조세정의의 부재다. 처분청은 ‘사전 폐기 승인’이라는 「관세법」상의 절차적 요건 미비를 환급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폐기는 화주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국가 수사기관의 엄격한 통제와 지휘 아래 수행된 공권력 집행이었다. 세관장이 직접 폐기를 집행해 물품의 비소비 사실을 확정하고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전에 수입자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 진실(비소비)보다 절차적 형식(신청)을 우선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국제 조세 원칙과의 괴리 및 이중 손실의 강요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다.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폐기됐음에도 관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의 재산을 귀속시키는 결과가 된다. 특히 선의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 손실이라는 경제적 타격에 더해 소비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조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의 징벌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처분은 조세의 공평부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법감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선의의 수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관세행정 신뢰를 회복하며 실질적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관세법」상 위약환급(제106조)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예외 조항 신설

현행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은 위약환급요건으로 ‘보세구역 반입’과 ‘세관장의 사전 승인’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품 수입과 같이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압수)이 개입되는 경우,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법리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물품이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검사의 지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기 처분된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에서 폐기된 것으로 의제(Presumption)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요건 불비(不備)가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법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상 보세구역 외에 압수창고 추가

현행법상 보세구역은 물품 장치와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범칙물품을 관리하는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납세업무고시」 제79조(환급요건) 중 ‘보세구역’의 범위 이외에 ‘세관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압수물품 보관장소’를 추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특히 관세 포탈 또는 밀수출입죄 등 고의적 범죄와 무관함이 입증된 선의의 수입자에 한해 국가가 점유권을 행사 중인 장소를 실질적인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로 추가함으로써 환급의 장소적 요건을 확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압수물품 보관장소가 세관 사무실이 되기도 하지만 ‘세관 구내창고’로 불리는 지정장치장의 일정 구역을 압수물품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장기과제) 검사 폐기 지휘와 연계된 직권 환급 또는 자동환급시스템 구축

선의의 수입자가 이미 가품 판정 및 폐기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환급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자료를 갖춰 환급을 신청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의 행정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본 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 제106조의 위약환급규정이 아닌, 법 제46조의 과오납금 환급규정을 곧바로 적용해 납세자가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검찰의 가품 폐기 지휘에 따라 세관이 직접 폐기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폐기사실 확인서가 발행됨과 동시에 시스템상으

로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으로 자동 분류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폐기 집행과 환급 결정을 하나의 행정 프로세스로 통합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기납부 세액을 과오납금으로 처리해 반환하는 ‘직권 환급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Ⅶ. 맺음말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현행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관계로 인해 조세 및 관세평가 본질과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충실한 법해석을 통한 법적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본 건과 같이 가품 수입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물품이 압수·폐기돼 소비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선의의 수입자가 가품 수입의 피해를 넘어 세금 부담의 피해까지 떠안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한금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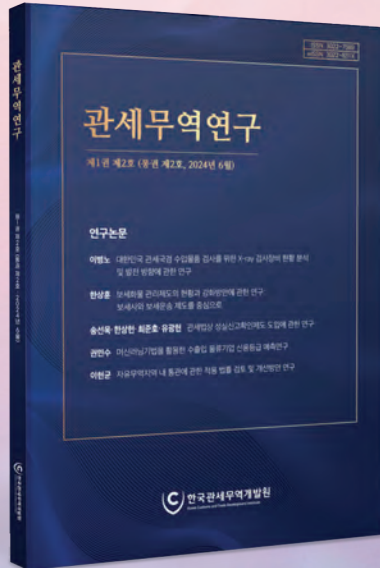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